

구상금(식중독 관련) 청구소송

소송종류	민사소송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가소 ○○○○○○	사건유형	구상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인천광역시 대표자 교육감
판결선고일	2016. 9. 8.	비고	
사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 11명의 학생들은 인천○○고등학교에서 재학중이던 2013년 6월, 학교급식으로 제공된 훈제족발을 먹고 병원성대장균에 의한 식중독이 집단발병되어 치료 및 처방조제를 받았고, 이 사고로 인천○○고등학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 - 원고는 2013. 6. 25.부터 2013. 7. 1.까지 원고의 지정의료기관에서 위 학생들의 치료를 위하여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448,280원 중 본인일부부담금 132,60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요양급여비 315,550원을 요약기관 등의 청구에 의해 지급함 -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교내의 환경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해야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인천광역시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위 학생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위 학생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 하였음을 이유로 소 제기 - 피고 인천광역시의 과실이 인정되어 청구가 인용됨 		
주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고는 원고에게 315,5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0.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주문과 같음		
판결이유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		

계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잡아 얻어지는 확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인과관계를 의미함

-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급식 제공된 훈제족발무침에서 병원균이 발견된 점, 제조사인 주식회사 △△로부터 동일한 날자에 냉장 족발 완제품을 공급받은 다른 학교들에서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해당 식중독균은 고온에서 충분히 중탕할 경우 사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중탕을 철저히 하는 조리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도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수사항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생관리에 관한 직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과실과 이 사건 식중독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